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2-019-164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울시 송파구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2. 11. 30.

주 문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과 태 료 : 원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에 가입을 하지 않은 와이용중지를 요청한 에게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언론 보도¹⁾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를 운영하

를 운영하면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항목	수집기간	건수		
	(필수) (선택)		(유효) 건		

1)

나. 개인정보 침해 경위

1) 침해 인지 및 대응

일 시	피심인의 유출인지 및 대응 내용

2) 침해경위

피심인은 프로모션 기간()중 에 가입한에게 ' 계약 안내'문자메시지를 개별발송하려 하였으나,문자메시지수신자를 'All'로 잘못 지정하여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에게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서비스 이용중지 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상태값을 변경하여 보관(건)한 사실이 있다.

나. 1년 이상 미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을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실(조사 착수일 기준 최장 3년 8개월 간 분리하지 않고 저장)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8.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1.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서비스 이용 중지 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상태값을 변경하여 보관(건)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1년 이상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1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조사착수일 기준 최장 3년 8개월 간 분리하지 않고 저장)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보호법 §21①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위반	보호법 §39조의6①	§48조의5①	•1년 이상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만원으로 산정한다.

<「보호법」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마.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정)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보호법 제32조2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위반				
계				

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	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위반조항	위 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법 제21조 제1항	안전 조치의 무	2022. 11. 30.	과대료 부과 만원	만원		
	법 제39조의6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72022. 11. 30.	씌네쇼 무ᆈ - 근전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 제75조제2항제4호, 제66조(결과의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11월 30일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서 명) 서 종 식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위 이 희 정 (서 명) 원 위 (서 명) 원 지 성 우